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6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
 - 규모 : 613.59㎡
 - 위치도



- 소속기관 : 종합재가센터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20.8월기준)
- 종합재가센터(5개소)

연번	기관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성동종합재가센터(간호특화형)	성동구 아차산로33 2층	'19. 7.23.
2	은평종합재가센터(기본형)	은평구 진흥로77 3층	'19. 8.28.
3	강서종합재가센터(기본형)	강서구 공항대로325 3층	'19. 9.18.
4	노원종합재가센터(확대형)	노원구 한글비석로432 3층	'19.10.23.
5	마포종합재가센터(통원형)	마포구 마포대로11길44-81 지하1,지상2층	'20. 1.17.

- 국공립어린이집(4개소)

연번	기관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노원든든 어린이집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0.3.2.
2	서대문든든 어린이집	서대문구 거북골로100	'20.5.1.
3	중랑든든(새우개하나) 어린이집	중랑구 용마산로 139다길17	'20.7.1.
4	은평든든(응암행복) 어린이집	은평구 은평로220	'20.7.1.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총 소요예산(안) : 38,142,960천원

라. 산출근거

○ 인 건 비 : 26,329,629천원(본부 및 소속기관)

○ 사 업 비 : 11,813,331천원(사무운영비, 정책사업비, 연구개발비 등)

마. 출연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팀 박선영 (☎ 2133-7755)